QR코드를 스캔하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과학기술 관련 인권 규범에 대한 연구〉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관련 인권 규범에 대한 연구

김현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phlaw@ewha.ac.kr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이 사회의 변화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과학기술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에 개인의 사적 생활과 공적 생활 모두 깊숙하게 침투해 있다. 이런 맥락에서 현대 사회를 과학기술 사회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I. 연구의 배경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이 사회의 변화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과학기술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에 개인의 사적 생활과 공적 생활 모두 깊숙하게 침투해 있다. 이런 맥락에서 현대 사회를 과학기술 사회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과학기술 사회에서는 그 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가능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으로 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인권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인권 담론은 항상 시대적 상황에 따라 새롭게 변화해 왔다. 그것이 인권이 제도화된 권리와 구별되는 특징인 것이다. 따라서 과학기술 사회의 시대적 상황은 그에 맞는 또 다른 인권 담론을 요청하게 된다. 즉, 과학기술 사회에 새로운 취약 계층을 발굴하고 그들의 삶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인권 담론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과학기술 인권'이라고 범주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 인권에 대한 이론적 담론의 기초를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이론적 기초는 현재의 과학기술 인권 문제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대응을 위해서도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과학기술의 혜택을 보통의 시민들이 수동적으로 누리는 상황을 전제로 하여 형성된 종래의 과학기술관에서 벗어나, 모든 시민들이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각자의 삶을 능동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상태를 인권이 달성할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종래의 과학기술 인권이 과학기술이 가져다주는 혜택을 누릴 권리 또는 과학기술적 지식의 창작자인 전문 과학기술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최근에는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 사회의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과학기술의 위험성을 적절히 통제하는 한편, 과학기술과 관련한 국가정책의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점에 대해서까지 논의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과학기술 관련 국제 인권 규범의 전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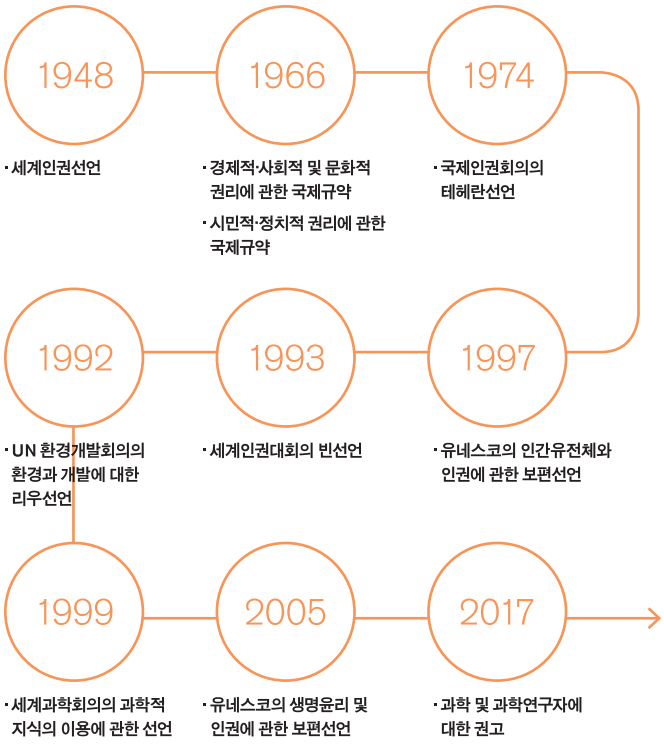

II. 주요 내용

1. 연구의 목적

과학기술에 관한 인권 규범은 이미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되어 있었고, 그 이후의 여러 국제 인권 규범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국내에는 이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과학기술에 관한 제도와 정책을 개발할 때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었다. 본 연구는 우선 국제 인권 규범의 발달 과정을 통해 과학기술 인권의 중심 내용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천되어 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오늘날의 과학기술사회에서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과학기술 관련 국제 인권 규범의 전개 현황

본 연구는 과학기술 인권에 대한 국제 규범의 전개를 정리하였는데, 이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현대적인 의미의 국제 인권법 체제의 정립은 세계인권선언[1948]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고, 과학기술과 관련한 인권 조항 역시 동 선언에서 제시되었다. 과학기술에 대한 향유권과 창작자의 인권 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제 인권 규범은 이후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을 기초로 하여 구속력 있는 체제를 형성해 오고 있다. 국제인권회의의 테헤란선언[1968], 유네스코의 과학연구자의 지위에 관한 권고[1974], UN 환경개발회의의 환경과 개발에 대한 리우선언[1992], 세계인권대회의 빈선언[1993] 등을 거치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통제권으로서의 인권 개념이 발달하게 되었다. 유네스코의 인간유전체와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1997], 세계과학회의의 과학적 지식의 이용에 관한 선언[1999], 유네스코의 생명윤리 및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2005]과 과학 및 과학연구자에 대한 권고[2017] 등을 통해서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의 이해 향상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국가적 정책 수립의 과정에 시민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이 새롭게 강조되었다.

3. 과학기술 인권 패러다임의 변화

본 연구는 이런 기존의 과학기술 인권에 관한 국제 규범을 파악하면서, 이 과학기술 인권 규범이 3단계의 패러다임 변화가 있었다는 이론을 정립하였다. 1단계는 시민들에게 과학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과학기술인은 과학기술의 개발에 따른 이익을 가져감으로써 적극적으로 과학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누리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었다. 이런 1단계 과학기술 인권은 과학기술 자체가 위험을 가진 것은 아니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이른바 '과학기술의 중립성' 테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를 거치면서 과학기술 자체의 위험을 강조하면서 과학기술을 정치와 경제에 도입하려는 주체에 대항하여 시민이 견제하고 감시하며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담론이 등장하였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과학기술 인권에 관한 국제규범이 대거 등장하였는데, 이를 2단계 과학기술 인권 시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민을 넘어 시민 스스로 과학기술인인 이른바 '시민-과학자' 시대로 향하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 인권 2단계에서 제기된 과학기술에

국가의 책무 목록

01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의 권리

- 과학기술 연구와 개발의 자유
- 동의 없이 과학기술 실험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
- 과학기술 지식과 성과에 공정하게 접근할 권리
- 과학기술 성과를 공유하고 이익을 사회적으로 누릴 권리
- 과학기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 과학기술에 관한 사회적 담론과 국가정책수립에 참여할 권리

02

과학기술인의 권리

- 과학기술 연구와 개발의 자유
- 과학기술 연구 성과에 따른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
- 과학기술에 관한 사회적 담론과 국가정책수립에 참여할 권리
- 과학기술 연구 개발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물리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03

국가의 책무

- 과학기술 관련 시민의 권리 및 과학기술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책무
-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확산할 책무
-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공론의 형성을 위해 노력할 책무
- 과학기술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여 안전을 확보할 책무

대한 통제라는 시민의 책무를 그대로 가지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과학기술 자체에 개입하는 상황을 포착해야 하는 과제를 제시한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인권의 새로운 단계를 모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4. 과학기술 인권 목록과 국가의 책무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하여, 현재 과학기술 인권으로 포착할 수 있는 세부 권리의 목록과 이에 대응하는 국가의 책무 목록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왼쪽 표와 같다.

이 권리와 책무의 목록은 앞으로 과학기술에 관한 법제를 형성할 때 지향해야 할 규범적 가치들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과학기술 정책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학술적으로도 본 연구는 현대 사회의 과학기술 의존적 특성을 반영하여 개인의 인권과 국가의 의무에 관한 새로운 접근의 기회와 다양한 논의의 형성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장차 본 연구가 과학기술 인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데 기초가 되어서, 인권 담론이 변화하는 현실에 적합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